

第240回國會 (臨時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1 號(附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6月13日(金)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답변서】

(질의서)

○崔榮熙 委員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채용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은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채용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국고로 지원하다가 2001년도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국고가 중단되었던 사업인데 작년에 다시 지원하게 된 사업인줄 압니다.

금년도 예산안에는 1인당 매월 101만 원씩 10개월을 근무하는 계획으로 3023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30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안에는 전산보조원 지원을 원하는 7193개교의 약 75%에 해당하는 5352개교에 전산보조원을 채용·지원하는 예산 141억여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과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998년도의 경우 예비비로 추진되었고 1999년도에도 당초 9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추경을 통해서 80억 원을 또 추가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0년에는 당초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가 역시 추경을 통해 13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000년도에는 국회심의과정에서 간신히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교사들이 학교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전문적인 정보처리 담당자를 고용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이들에 대한 후생복지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안에 의하면 이들의 급여를 일체의 상여금도 없이 매월 101만 원씩 지불하고 1년 중 10개월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급여를 101만 원을 산정한 것은 아마도 4인 가족기준 최저생계비 101만 9411원에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적은 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2002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13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급여를 보장하든지 처음부터 정규교원에 준하는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방학기간에는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서 10개월의 급여만 산정된 것도 12개월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에 대하여

다음은 오늘 상정안건인 추경안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식중독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학교급식 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금년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소재 13개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를 근거로 위탁급식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고 이러한 위탁급식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5월 27일에 단계적으로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 법률안이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번 회기에 심사를 못하게 된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법률개정을 통해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법률개정과는 별도로 학교급식 식중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관심과 예방대책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3월 식중독 사고 유발 학교에 대한 사후처리를 중심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식중독사고를 유발한 13개 학교에 급식을 공급하고 있던 3개의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보니까 모두 위탁급식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생각은 들지만 계약을 해지당한 3개 업체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급식방해금지처분” 소송제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부당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을 해지당한 업체가 제기한 소송의 취지를 보면 법원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업체가 위탁급식을 실시할 지위를 가져야 하고 학교급식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신청인들 소유의 학교급식 설비를 제3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소송취지가 법원판결에 의해서 수용된다고 하면 기존의 위탁급식업체가 계약기간 만료될 때까지 다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표준서식으로 마련한 「학교급식 운영위탁 계약서」 제14조제1항제6호를 보면 「‘을’이 식중독 및 기타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를 입혔을 때 ‘을’은 ‘갑’의 계약해지 통보에 조건없이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발생 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결과 급식공급업체의 보존식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에서 특이한 원인병원체를 발견하지 못했고 식자재공급업체인 CJ푸드와 현대식품에 대한 조사에서도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결과적으로 원인규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느냐 하는 점이 결국 사법적 판단에 맡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을 규명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복잡한 식자재의 유통경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식공급업체가 식자재를 수급하는 경로는 직접구매하는 방식과 식자재 공급업체로부터 간접구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식자재 공급업체인 ‘현대식품’의 경우 지난 3월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13개 학교 모두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고 CJ푸드는 9개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형 식자재 공급업체가 대부분의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현재의 위탁급식 식자재 공급업하에서는 제2, 제3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식자재 공급업체의 유통시스템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형 식자재 공급업체의 식재료 배송시스템을 보면 대부분 자체 차량이 아닌 지입차를 통해 배송하고 있는데 경비절감 차원에서 외부차량을 통해서 식재료를 학교마다 배송하는 시스템에서 위생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위생보다 비용절감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지입차주가 냉동 및 냉장을 위한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식자재를 배송하는지에 대한 관리부재는 물론 식자재를 담은 박스 역시 부패한 찌꺼기로 인한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목적도 직영급식의 경우 이윤추구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위탁급식에 비해 보다 질 좋은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담보하고 있다는 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통과와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오늘도 학교급식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탁급식이든 직영급식이든 간에 식자재 유통과정상의 식중독 유발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부총리의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위탁급식보다는 직영급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대통령께서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몇 % 증액하는 식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편성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부총리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당장 내년예산 편성에 있어서 직영급식

을 희망하는 학교를 파악해서 시설비와 운영비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학교영양사를 영양교사화하는 문제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답변서)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부분>

(李在禎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초·중등학교의 전산보조원 활용 현황과 향후 전산보조원 확보대책은?

우리 부는 98년부터 실업자대책의 일환으로 “전산보조원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데 2002년에는 국고 200억 원을 지원하여 3924명을 채용하여 활용하였고 2003년에는 지방비로 302억 원을 확보하여 약 3000명을 채용·활용하고 있음.

현재 각급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전문성을 갖춘 전산보조 인력을 배치할 필요는 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무원 정원과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추진하기 어려움.

이에 우리 부는 전산보조원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으로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교육청에 컴퓨터 수리지원반 운영, 교원 컴퓨터 연수 강화 등을 통해 각급학교의 정보화인프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원칙과 효과성은 있는지 국책사업과는 어떠한 연계가 있는지?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2002년 7월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발표한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의 일환으로 2003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임

우수한 학생들의 이공계열 학과 진학을 유도하고 일정기준의 학업성적을 유지할 경우 졸업 시 까지 학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이공계 학생들이 타계열보다 비싼 학비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기초연구능력의 배양과 우수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함.

장학금 신청 시 이공계열 관련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고등학교 수학과 과학의 내신성적이 30% 이내인 자로서 수도권 소재 대학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연계열 응시자로서 수리 및 과학탐구영역 중 한 영역이 1등급(상위 4%)이고 다른 영역이 2등급(상위 11%) 이내인자를 지방 대학 신입생은 수리 및 과학탐구영역 모두 3등급(상위 23%) 이내인 자를 신청대상으로 하였음.

(朴昌達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2002. 6. 13 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두 여중생에 대한 미군 당국과 우리 정부의 보상내역은?

무엇보다는 사망한 두 여중생에 대한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 사건은 미군의 공무 중에 발생한 것이기에 SOFA규정에 따라 미국이 75%를 우리 정부(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25%를 분담하였는바 고 심미선 양에게는 1억 9500만 원을 고 신희순 양에게는 1억 9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위로금 모금액수는 현재 파악 중이므로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대 시설확충 추경예산이 일부대학에 편중 지원 되는 것은 아닌지?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대학시설확충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추가 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해당 대학으로부터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시설공사 특성상 동일한 예산이라도 기초 및 골조공사는 많은 공기가 소요되는 반면 마감공사는 복합공종 공사가 동시에 가능하므로 공기가 적게 소요되어 사업별로 지원 규모 차이가 발생하였음

추경에 대한 대학별 검토내용 : 붙임 참조

(黃祐呂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노후PC 교체에 따라 대응투자되는 지방비 부담의 구체적인 재원내역은?

<노후PC 교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재원내역>
(단위 : 백만 원)

| 교육청 | 국고지원 (추정) | 지방비 부담액 | 지방비 재원내역 |
|-----|-----------|---------|-----------------|
| 서울 | 3,476 | 13,903 | 전입금 |
| 부산 | 986 | 3,942 | 전입금, 예산미집행, 예비비 |
| 대구 | 1,505 | 6,018 | 예산미집행액 |
| 인천 | 164 | 655 | 예산미집행액 |

| 교육청 | 국고지원 (추정) | 지방비 부담액 | 지방비 재원내역 |
|-----|--------------|------------|----------------------|
| 광주 | 750 | 2,999 | 예비비 |
| 대전 | 1,689 | 6,755 | 예산미집행액 |
| 울산 | 125 | 500 | 예비비 |
| 경기 | 10,107 | 40,427 | 전입금 |
| 강원 | 504 | 2,016 | 예비비 |
| 충북 | 351 | 1,404 | 예비비 |
| 충남 | 1,658 | 6,631 | 예산미집행액 |
| 전북 | 250 | 1,000 | 재산수입 |
| 전남 | 1,920 | 7,680 | 예금이자, 예비비, 예산미집행액 |
| 경북 | 1,756 | 7,025 | 예산미집행액 |
| 경남 | 1,701 | 6,804 | 전입금, 예산미집행액 |
| 제주 | 74 | 295 | 예산미집행액, 예비비 |
| 합 계 | 27,016 | 108,054 | |

본 자료는 기획예산처와 추경예산협의 시 조사한 것임.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가도록 할 것.

동 사업은 단순히 복지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공교육화의 전 단계로써 초등학교 취학 전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출발점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

미술학원에서 대상기관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나 미술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해 지식·기술·예능 등을 교습하는 시설임으로 만 5세아 무상교육 대상기관으로 인정하기가 곤란.

우리 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미술학원이 본래의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되 무상교육기관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전환을 유도할 계획.

※유아미술학원연합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무상교육기관으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 ('01. 11. 19) 계류 중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부분>

(崔榮熙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만 5세아 무상교육관련 복지부와 분산 지원되고 있는 예산 통합방안 강구 방안은?

금년은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만 5세아

의 20%(목표치)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나(적정비율 편성) 현재로서는 복지부 보육시설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시점이라 복지부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음.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복지부, 예산처와 협의하여 통합방안(예산이체 등)을 강구하겠음.

<관련법령> 예산회계법

第36條 (豫算의 目的외 사용금지와 豫算移替)

①각 中央官署의 長은 歲出豫算이 정한 目的의 外에 經費를 사용하거나 豫算이 정한 各 機關間, 各 章·款·項間에 相互移用할 수 없다. 다만 豫算執行上 필요에 의하여 미리 豫算으로 써 國會의 議決을 얻었을 때에는 企劃豫算處長 官의 승인을 얻어 移用할 수 있다.

이공계 육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보다는 대학의 연구여건 개선 등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공계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직업 안정성 제고,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정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지난 해에 「청소년 이공계 진출촉진 종합대책('02. 7. 22)」을 범정부적으로 수립·발표하였으며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 사업” 역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또한 지방대 육성을 위해 우수교수 유치, 연구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음. 지적하신 내용들은 현 정부의 중점추진과제인 “지방대 육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이공계의 경우 학비나 학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장학금 지원 사업도 매우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함.

지방대학 육성 사업예산을 지역별로 균형 분배하는 것보다는 당초의 취지대로 사업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는?

지방대학 육성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26개 대상학교 중 30여개 대학 선정·지원 예정.

다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간의 균형도 어느 정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평가·선정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 : 중부권(대전, 충북, 충남, 강원), 동남권(부산, 울산, 경북, 경남), 서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사업계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03. 6. 10 접수 마감된 2003년도 지방대학 육성사업 신청

현황 : 붙임 참조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도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일반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연장하는 등의 실질적인 종일반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유아의 교육과 보호 기능을 통합 제공하기 위한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함.

종일반 운영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담교사 배치 및 시설환경개선이 필수적이므로 2004년부터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오니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02년 유치원 종일반 운영 현황
원수 : 2458(29.6%) 학급수 : 3228(15.0%)
원아수 : 5만 6688(10.3%)
※04년 종일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소요예산 : 60억 원
- 831개원의 원당 교사 1명(총 유치원 8308개원의 10%)

1.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위탁급식보다는 직영급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2. 그러면 당장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직영급식을 희망하는 학교를 파악해서 시설비와 운영비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에 대한 견해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위탁급식보다는 직영급

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는 위탁급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난 4월 23일자로 시·도 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계약기간 만료 시에 직영급식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참고사항>

※현재 전체 학교의 96.4%인 9989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81.2%인 8115개교는 직영급식이고 18.8%인 1874개교는 위탁 급식으로 운영.

※학교급식법에 의거 운영형태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

2. 직영급식 전환 소요예산 반영에 대하여

현재 전체의 18.8%인 1874개교에서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내 부지 협소 등으로 급식시설을 갖추기 곤란하여 외부업체가 조리한 급식품을 반입하여 제공하는 학교가 343개교이고 나머지 1531개교(81.7%)는 교내에 급식시설을 완비하고 급식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학교입니다.

따라서 위탁급식 학교도 대부분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어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별도의 시설비가 크게 소요되지는 않지만 노후된 급식시설 개선 및 급식기구 확충, 영양사 인건비 등 필요한 예산은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 의거 급식시설비 및 인건비는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이 원칙임.

※위탁급식 계약기간 만료시기 조사결과 : 03년 말까지 472교, 04년 765교, 05년 460교, 06년 162교 등

학교 영양사를 영양교사화하는 문제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학교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격을 갖추기 위한 연수, 9급 지방직공무원에서 교사로 전환에 따른 보수, 업무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 이들의 채용에 따른 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재 학교영양사의 영양교사로 전환하는 기간 및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고 전환에 따른 연수내용 및 담당업무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요예산을 추정할 수 없는 상

태입.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제반 문제를 정비한 후 입법을 추진하자는 입장임.

전산보조원 채용관련 정규교원에 준하는 급여체제 마련을 위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전산보조원은 당초 학생들의 컴퓨터실습실을 도와주고 선생님들의 정보처리 업무를 도와줄 전산인력 확보차원과 고학력 청년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우선 단기 계약직(일용직)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방학기간 중에는 학생수업이 없는 관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음.

현재의 전산보조원에 대한 급여는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방학기간 중에도 전산보조원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보수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